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0 호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61호 (청결유지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7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공고·열람)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47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영종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청결유지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인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1. 공고제목 : 청결유지 이행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3. 공고대상

순번	성명	대상지	처분내용	송달불가사유
1	(주)에**디**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873-7	청결유지명령(3차)	폐문부재
2	우**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3122-6,7,8,9	청결유지명령(1차)	수취인불명

- 4. 조치내용 : 2026. 9. 3.(목)까지 대상지 청결유지 이행(방치폐기물 처리)
- 5. 공고기간 : 2026. 8. 19.(수) ~ 2026. 9. 3.(목) (15일간)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청 자원순환과 생활청소팀(☎032-760-7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47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제 정 이 유

영종구립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가. 목적 및 합창단의 설치(안 제1조 ~ 제2조)
- 나. 합창단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 제4조)
- 다. 단원 등의 임무 및 위촉(안 제5조 ~ 제6조)
- 라. 단원 등의 위촉 해제(안 제7조)
- 마. 운영자문 및 공연(안 제8조 ~ 제9조)
- 바. 경비의 지원 및 운영의 위탁(안 제10조 ~ 제11조)

☐ 의 건 제 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문화관광체육과(문화예술팀)

▷ 전 화 : 032)760-7604 [FAX 032)760-760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종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2.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3.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구민화합 기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활동

제4조(구성 등) ① 각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합창단의 단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④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단원 등을 지휘·감독하고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 등의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합창단 단원은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영종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8세 이상 19세 이하로서 영종구에 거주하거나 영종구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위촉 해제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위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단원 등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2. 단원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4. 합창단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 등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제6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합창단의 조직·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연) ①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

③ 합창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중구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 등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서용]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 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사업명: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 공사)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1. 변경사유: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산171-1번지 일원
4.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중1-505호선) 폭(B): 20m, 연장(L): 237m, 면적(A): 8,361㎡(감 140㎡) (변경)
 - (소1-12호선) 폭(B): 10m, 연장(L): 777m, 면적(A): 15,798㎡(감 56㎡) (변경)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당 초	변 경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6. 12. 31.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7.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변경없음)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름. (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05	20	집산도로	578(237)	무의동 245(중1-504)	무의동 산171-1	일반도로	-	2001.10.01.(인고197호)	
변경	중로	1	505	20	집산도로	578(237)	무의동 245(중1-504)	무의동 산171-1	일반도로	-	2001.10.01.(인고197호)	면적변경
기정	소로	1	12	10	집산도로	777	무의동 산171-52(중로1-505)	무의동 산189	일반도로	-	2017.09.11.(중고130호)	
변경	소로	1	12	10	집산도로	777	무의동 산171-52(중로1-505)	무의동 산189	일반도로	-	2017.09.11.(중고130호)	면적변경

※ () : 금회 사업구간, 중1-505호선은 부분개설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면적만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중1-505호선	○ 사업면적 변경 - 당초 A = 15,616㎡ - 변경 A = 15,476㎡(감140㎡)	○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소1-12호선	○ 사업면적 변경 - 당초 A = 15,854㎡ - 변경 A = 15,798㎡(감56㎡)	○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10.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도시계획과, 032-760-7573, 인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 인천광역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032-760-6416 인천 영종구 마시란로 308-13)

12.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473호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 제 정 이 유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종구립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가. 합창단 운영일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단원 등의 모집절차 및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단원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합창단의 연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지휘자 등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별표)
- 바. 합창단의 목적 외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 건 제 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중산동)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문화관광체육과(문화예술팀)

▷ 전 화 : 032)760-7604 [FAX 032)760-7609]

☐ 공 청 회 개 최 : 개 최 계 획 없 음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는 합창단의 활동에 관한 운영일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절차 등) ① 구청장이 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 및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일 20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모원서를, 단원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 및 단원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평정방법 및 기준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5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 및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위촉해제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휘자·반주자 및 성악코치는 정기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합창단의 발전과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연습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목적 외 활동)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 및 단원은 합창단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 및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u>합창단 운영일지</u> (제2조 관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전결		재
일 시	년 월 일 (요일) : ~ :				
참석현황	지 휘 자	(서명)			
	반 주 자	(서명)			
	성악코치	(서명)			
	단 원	총 명 (참석: 명, 불참: 명)			
활 동 내 용					
작 성 자 (지 휘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응 모 원 서(제3조제2항 관련)

※응시번호				응 시 분 야		☐ 합창단 ☐ 소년소녀합창단		사진(1) 3.5cm× 4.5cm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응 시 직 위		☐ 지휘자 ☐ 반주자 ☐ 성악코치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한자			직		업			
주 소	자택					전		화	
	E-Mail					휴대전화			
학력	대 학 교		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대 학 원		년		월(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해당 분야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								
	~								
병역사항									
첨부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수상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실적증빙자료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전문인력 모집에 응모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장,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전문인력 모집」지원자 심사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5년									
위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전문인력 모집」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자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주의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응 시 표	성 명			사진(2) 3.5cm× 4.5cm (반명함판) ※응시원서와 동일사진부착
	생 년 월 일			
※응시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인천영종구청장	
응시분야	☐ 합창단 ☐ 소년소녀합창단			
응시직위	☐ 지휘자 ☐ 반주자 ☐ 성악코치			

※ 면접시험 시 본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합창단 지원서 (제3조 제2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 .	사진 (3.5cm×4.5cm)
주소				
연락처	TEL: (HP:)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과 년)	
	① 졸업(수료) ② 중퇴 ③ 재학		※ 해당사항에 ○표시	
경력 (합창단)	년 월 일 ~ 년 월 일		합창단원	
	년 월 일 ~ 년 월 일		합창단원	
	년 월 일 ~ 년 월 일		합창단원	
지원부문	①S. ②A. ③T. ④B.		선택곡명	
본인은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장,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단원 모집」지원자 심사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5년 위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단원 모집」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단원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서 약 서 (제3조제3항 관련)

성 명:

주 소: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단원 등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위 축 장 (제5조제1항 관련)

성 명:

귀하를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단원)로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

위촉 해제 통지서 (제5조제2항 관련)

- 1. 소 속: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 2. 직 위: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단원)
- 3. 성 명:
- 4. 위촉 해제 사유: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

【별지 제7호서식】

[illegible]

【별 표】

지휘자 등 수당 지급 기준 (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월 지급액	1,700,000	1,300,000	1,000,000

[부서용]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 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